



시 보



제1525호 2021. 11. 15.(월)

공 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 16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21 - 1824 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정원조정
- 국가주요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정원반영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1,348명 ⇒ 1,367명(⊕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25명 ⇒ 1,338명(⊕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명 ⇒ 29명(⊕6명)

나. 상세내역

- 국가정책사업 추진 인력: ⊕9명
-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 ⊕10명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19	19		836,053,420	
7급	5	5	55,146,452	275,732,260	5호봉
9급	14	14	39,762,450	560,321,160	1호봉

8.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5. ~ 11. 22.(7일간)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2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48명이며”를 “1,36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25명”을 “1,33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3명”을 “2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1,348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25명</u></p> <p>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3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 <u>1,367명</u>이며-----</p> <p>-----</p> <p>1. ----- <u>1,338명</u></p> <p>2. -----<u>29명</u></p>

별표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367</u>	<u>1,367</u>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346</u>	<u>1,346</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이하	<u>1,267</u>	<u>1,267</u>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 - 1808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 법 개정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국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114호~115호)
- 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안 제7조제90호)
- 다. 스마트빅데이터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안 제9조제78호~81호)
- 라. 스마트시티업무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삭제(안 제29조제55호)
- 마. 공동주택지도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안 제31조제75호~79호)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5. ~ 2021. 11. 25.(10일간)

9.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5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에 제114호, 제1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부서별 인구 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

115.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개발

제7조에 9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

제9조에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업무

79. 스마트시티 추진 종합계획 수립

80. 스마트시티 분야별 사업추진 및 공모사업지원

81. 뉴딜데이터사업 업무

제29조에 제55호를 삭제한다.

제31조에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를, 제79호, 제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 공동주택 회계 관리실태 조사·감사

76.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77. 공동주택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78. 공동주택 감사청구 및 컨설팅 창구 운영

79.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목포시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 일에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3. (현행과 같음)</p> <p>114. 부서별 인구유입정책 지원 및 통합관리</p> <p>115. 인구유입 시책 및 지원제도 개발</p>
<p>제7조(세정과)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9. (생략)</p> <p><신설></p>	<p>제9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9. (현행과 같음)</p> <p>90.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p>
<p>제9조(정보통신과)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7.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9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7. (현행과 같음)</p> <p>78.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업무</p> <p>79. 스마트시티 추진 종합계획 수립</p> <p>80. 스마트시티 분야별 사업추진 및 공모사업지원</p> <p>81. 뉴딜 데이터사업 업무</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도시계획과)도시계획 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4. (생략)</p> <p>55.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p> <p>제31조(건축행정과)건축행정 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7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9조(도시계획과)도시계획 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4. (현행과 같음)</p> <p><폐지></p> <p>제31조(건축행정과)건축행정 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74. (현행과 같음)</p> <p>75. 공동주택 회계관리실태 조사·감사</p> <p>76.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p> <p>77. 공동주택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p> <p>78. 공동주택 감사청구 및 컨설팅 창구 운영</p> <p>79. 공동주택 민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p>	<p>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계 법령	내 용
<p>□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3년 1월 시행)</p>	<p>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p> <p>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p>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p>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 - 1781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목포시 대양동 일원의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목 포 시 장

1.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목포시청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2. 사업목적

미처리구역인 대양처리분구 내 발생하수를 북향공공하수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3. 공공하수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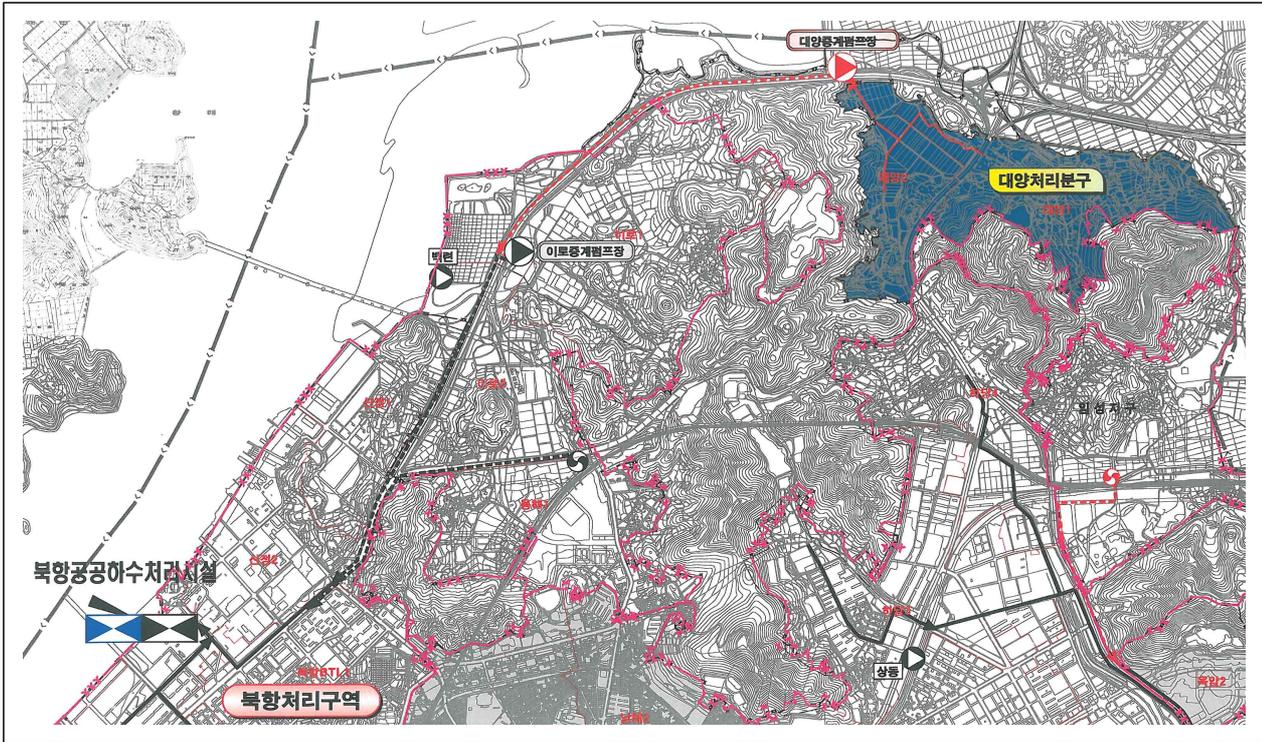
가. 위치 : 목포시 대양동 일원

나. 종류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다. 규모 : 오수중계펌프장 5,000ton/일

압송관로 D300 L=2.315km

4. 공공하수처리구역 : 2.64km²(대양처리분구)



5. 공공하수도의 배제방식 : 합류식

6. 열람기간 : 2021. 11. 15. ~ 12. 04.(20일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는 하수도법 및 목포시 하수도조례에 의함.
-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포시 하수도조례 규정에 의거 목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하수과(061-270-8627, 8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